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9.2(수) 10:00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3. 제안 이유

○ 신·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(대부)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, 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근거 신설(안 제22조제2항)

나.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시 도의회 동의 절차 신설(안 제22조제3항)

다. 신·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적용 대상 개정(안 제6조제1항)

라. 위원회 연임제한 개정(안 제13조제4항) 및 이해충돌방지, 위촉해제 규정 신설(안 제16조의2, 제16조의3)

마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(안 제1조 등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신·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(대부) 근거 및 절차

를 마련하고, 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

○ 다만, 안 제22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지사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